

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모집 재공고

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1일

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

1. 모집개요

- 시설명 : 용산 청년창업지원센터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, 공공시설동 4층
- 공간구성 : 보육공간, 운영사무실(1실), 소회의실(3실), 교육실(1실), 커뮤니티 공간(1실)

면적		2인실	4인실	개방형 공간
전체	전용			
710㎡	513.6㎡	10실 (134.51㎡) (실별면적 약 13.4㎡)	7실 (140.69㎡) (실별면적 약 20㎡)	11석 (52.38㎡)

- 모집규모 : 5개 기업 (2인실)
- 지원내용 : 입주공간 사용
- 입주기간 : 1년 (심사를 통해 1년 연장 가능)
- 입주일 : 2026. 1월 중 (예정)
- 입주비용

전용면적 (2인실 기준)	연간임대료 (2025년 기준)	보증금 (입주 시 납부)	관리비	주차료
약 13.4㎡	1,026,200원	480,000원	매월 실별 부과	유료 (입주자 별도 부담)

* 연간임대료 및 보증금은 물가상승 등 변동요인에 따라 입주계약시마다 변동될 수 있음.

○ 신청 자격

① 19세 ~ 39세 청년 대표자

☞ 입주모집일('25.10.24.) 현재 대표자 연령 기준

☞ 공동대표,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해당되어야 함

② 용산구에서 거주하거나 용산구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,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☞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 연월일을 기준

*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

③ 사업자등록지를 용산 청년창업지원센터로 등록 및 이전이 가능한 자

☞ (예비창업자)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 등록 필수, (기창업자) 입주 후 2개월 내 소재지 이전 완료 필수

☞ 모집일('25.10.24.) 현재 용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용산구민 서면평가 가점 부여

○ 신청 제외 대상
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
- 휴·폐업중인 자
- 환경관련 법규에서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
- 창업목적, 창업아이디어, 기술우수 여부 등 평가자료를 검토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(유흥주점 등)

2. 모집일정

○ 접수기간 : 2025. 11. 11.(화) ~ 11. 13.(목), 09:00 ~ 18:00 (근무시간 중)

* 접수기간 연장 : (당초) 11. 5.(수) ~ 11. 7.(금)

- 제외시간 : 12:00 ~ 13:00 (중식)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

- 접수처 : 용산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(녹사평대로 150)

○ 제출서류 ※ 접수 마감시까지 구비서류 일부라도 누락한 경우 자동 탈락 처리

구비서류	비고
1. 입주승인 신청서	별도 첨부 양식
2. 사업계획서	별도 첨부 양식
3. 개인정보 수집·제공 동의서	별도 첨부 양식
4. 사업자등록 및 이전 확약서	별도 첨부 양식
5. 대표자 주민등록등본	대표자에 한함 * 모집공고일('25.10.24.) 이후 발급분
6. 사실증명원	☞ 예비창업자의 경우,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발급 ☞ 기창업자의 경우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 발급 * 모집공고일('25.10.24.) 이후 발급분 *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
7. 사업자등록증	해당 소지자에 한함 ☞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, 입주신청 해당 기업 포함 전체 사업자 등록증 제출
8.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	해당 소지자에 한함 * 모집공고일('25.10.24.) 이후 발급분
9. 국세납세증명서	☞ 예비창업자, 개인사업자: 개인 명의 ☞ 법인사업자: 법인 명의 * 모집공고일('25.10.24.) 이후 발급분
10. 지방세납세증명서	☞ 예비창업자, 개인사업자: 개인 명의 ☞ 법인사업자: 법인 명의 * 모집공고일('25.10.24.) 이후 발급분
11. 벤처기업확인서, 특허, 디자인, 실용신안등록증 등 성과자료 (소지자에 한함)	해당 소지자에 한함

○ 세부 일정



* 상기 일정은 내·외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.

3. 평가방법 및 절차

○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 심의

- 사업계획서 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실시
 -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입주 승인
- ※ 참여기업이 모집예정 기업 수 이상일 경우 공실 대비 예비 입주자 선정
(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평점 70점 미만 기업은 신규입주 및 예비입주 불가)

〈 대면평가 항목(안) 〉

평가항목(안)		
1	창업의지 및 역량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창업자 및 직원 역량■ 사업계획서 충실도■ 사업 경험 및 추진 의지 등
2	사업성 (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사업계획의 구체성, 현실성■ 사업 환경 분석의 이해도■ 비즈니스모델의 구체성 및 확장성■ 사업아이템 차별성■ 시장에서 매출 및 수출발생 가능성
3	시장성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목표 시장 이해 및 경쟁자 분석■ 사업아이템 시장 반응■ 사업아이템 확장 가능성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
4	기술성 (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해당 분야 핵심기술 보유■ 제품 및 기술의 기술수준, 품질, 성능 (특허, 인증 등 보유 여부)■ 제품 및 기술의 시장진입 및 성장 가능성
5	공간지원 필요성 (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지원동기 및 창업공간 활용계획의 타당성

○ 결과 발표 : 2025. 11. 20.(목) 예정

-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 유선 통보

4. 유의사항

- 발표평가 대상자는 11.14.(금) 공고 예정이며, 11.17.(월) 오전까지 발표자료 등 제출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(발표자료는 10p이내 핵심정보만 담아서 작성)
- 발표평가 시 예비창업자(팀) 본인(대표),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대리 참석 시 용산구청 사전연락 필수 (발표는 대표 1인만 참여)
-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최종 선정 안내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하며, 공실 발생 시에만 입주할 수 있음
- 최종 선정된 기업의 입주계약 시 센터운영규칙에 관한 관리규정이 별도 안내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내 준수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

- 최종 선정되더라도 계약해지 사유 발견 또는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중도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될 수 있음
 -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의 기재,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
 - 지정된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 및 계약 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
 - 사업계획서상 정상적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
 - 입주계약상 권리 등이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경우
 - 휴·폐업한 경우
 -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
 -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는 경우
 -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(예비창업자)
 -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(기창업자)
 - 센터 운영관리규정 위반(음주, 기물파손, 소음공해 발생 등)으로 3회 이상 경고제재 받은 경우 등
- 계약 후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반기별 사업추진현황(매출실적 등)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향후 연장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됨

5. 문의처

-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☎ 02-2199-4515